

# 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         | 422,565,448 | 12,676,963 |
| 일반회계                   | 317,914,811 | 9,537,444  |
| 특별회계                   | 104,650,637 | 3,139,519  |
|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        | 3,783,061   | 113,492    |
|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 | 3,783,061   | 113,492  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      | 100,867,576 | 3,026,027 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  | 13,953,150  | 418,595   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         | 585,086     | 17,553     |
|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         | 42,617,316  | 1,278,519  |
|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          | 8,059,608   | 241,788    |
|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 | 5,410,310   | 162,309    |
|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          | 1,675,000   | 50,250     |
|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 | 16,858,455  | 505,754    |
|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         | 985,750     | 29,573     |
| 의령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| 10,722,901  | 321,687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"생략"

제 4 조 "생략"

제 5 조 "생략"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,085,732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